

우리나라 노인양로시설의 실태분석

An Analysis of the Conditions for the Elderly housing Facilities

전명화* / Jeon, Myung-Hwa
황은경** / Hwang, Eun-Kyoung

Abstract

As the elderly has increased rapidly in Korea, there are needs of appropriate residential buildings for the elderly. But social welfare infrastructure for those is under the below level, and the guideline for the elderly housing facilities are also discontented and leave something to be desired. In this study we first surveyed the elderly housing facilities which has been built since 2000, and analyzed plans and the conditions of convenient facilities. This study result will be used in order to set up the design guidelines for the elderly housing facilities.

키워드 : 노인양로시설, 편의시설

Keywords : The elderly housing facilities, Convenient facilitie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노인양로시설은 자립형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형태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양로시설은 대부분 종교단체 및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저소득계층의 노인을 수용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거공간이라기 보다는 시설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며 사회적 요구에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며, 이에 정부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복지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노인양로시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신고시설뿐만 아니라 미인가시설까지 감안한다면 국내의 양로시설은 여전히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도 존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노인양로시설은 건물의 규모 및 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설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설계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현실이다. 노인양로시설과 관계된 시설기준으로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양로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설계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양로시설의 설계기준을 마련하기에 앞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노인양로시설의 계획현황 및 편의

시설 이용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방법은 크게 이론적 고찰과 실태조사로 구성된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노인양로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료시설을 제외한 무료 및 실비 양로시설로써 2000년 이후에 신축된 건물 15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계획현황 및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노인양로시설의 설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2. 노인양로시설의 이론적 고찰

2.1. 노인양로시설의 특성 및 현황

양로시설은 입소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따라 무료, 실비, 유료 양로시설로 구분된다. 무료 및 실비 양로시설은 65세 이상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들을 입소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절차를 걸쳐 설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양로시설은 1913년 평양양로원의 개설을 시작으로 노인전용주거시설로서는 가장 오래된 형태이다. 2006년 현재 무료·실비·유료를 합하여 총208곳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인 130곳이 2000년 이후에 신설되었다. 이는 모두가 신축건물이라기보다는 미인가시설로서 존립해오던 시설들이 대거 보건복지부에 신고절차과정에서 인가시설로 전환되면서 증가된 현상으로 판단된다.

* 정희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 정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공학박사

<표 1> 노인양로시설의 연도별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무료양로	85	5,724	78	4,972	137	6,051	106	5,272
실비양로	5	207	12	363	64	1,126	59	947
유료양로	29	2,326	41	2,853	69	3,954	44	3,306
계	119	8,257	131	8,188	270	11,131	208	9,525

2000년 이후에 신설된 130개의 양로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월등히 많으며 충청남·북도가 그 뒤를 잇는데 이는 서울에 가까이 위치하여 도시근교형의 장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규모별로는 대규모시설보다 30인 미만의 시설이 총 103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입소자 부담비용별로는 실비시설의 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 2000년 이후 노인양로시설의 규모별 신설개수

구분	10인미만			10인이상 30인미만			30인이상			계
	무료	실비	유료	무료	실비	유료	무료	실비	유료	
서울	2	1	1	4						8
대전							1			1
울산							1			1
경기	8	11	7	9	17	5	4	1	6	68
충북	4	4		2	5		2		1	18
충남	1	6	2	2	3	2			4	20
경북		4		2	1	2	1	1	1	11
경남		1		1			1			3
계	15	27	10	16	26	9	13	2	12	130

2.2. 기존 노인양로시설의 실태조사 분석 사례 검토

서유석(1994)은 입소정원이 5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양로원의 시설특성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양로원에 필수적인 단위실로는 거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사무실, 세면장의 5개이며, 의무실, 세탁장, 세탁물건조장, 목욕실, 오락실, 창고 등은 기본적인 부가시설, 환자실과 영안실, 이·미용실은 설치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양로시설의 보편적인 시설특성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나 90년대까지의 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근의 경향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신축 양로시설의 설계기준을 제안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양로시설의 수가 급증한 2000년 이후에 설립된 최근의 양로시설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3. 노인양로시설의 관계법령 검토

우리나라 노인양로시설과 관계된 법은 크게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

의증진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서는 노인양로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대상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에 의하여 "교육 및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받는다.

<표 3> 노인양로시설의 적용기준

편의증진법	구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기타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샤워실	객실 침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시설기준	노인복지법	-일조·채광·환기 등 충분히 고려 -복도·화장실·거실 등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 확보, 문턱제거, 손잡이 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의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화용 기구 비치 및 비상구 설치											
	실비기준	-거실: 1인당 5㎡이상의 면적, 1실당 4인이하, 보관시설, 채광·조명·방습설비 -식당 및 조리실: 내수바닥재료,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 -세면장 및 목욕장: 미끄럼방지, 자동온도조절장치, 손잡이설치 -오락실: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 비치 -체력단련실: 적절한 운동기구 비치 -의무실: 상용약품·위생재료, 의료기구 비치 -경사로: 거실이 2층이상인 경우, 승강기 설치시 예외 -복도·화장실 등에 야간 상용등 설치 -완만한 계단경사 및 난간 설치 -미끄럼방지 바닥재											

그러나 편의증진법의 경우, 침실과 욕실, 샤워실 등 노인양로시설의 주거공간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상의 시설 및 설비기준은 그 내용이 매우 개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여 설계과정에 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거실이라는 용어는 침실에 해당되는 공간으로서 용어상의 혼동이 야기될 위험이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3. 노인양로시설의 실태조사 분석

3.1. 조사개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00년 이후에 설립된 무료 및 실비 양로시설로서 지역별 분포현황 및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규모를 고려하여 총 15곳¹⁾을 선정하였으며, 조사대상의 개요는 <표 4>와 같다. 조사기간은 2007년 2월 8일~2월 28동안 실시되었으며, 추가적으로 70~80년대에 설립되었으나 최근 신축된 건물을 대상으로 서울에 위치한 2곳을 선정하여 2007년 4월 24일에 보완조사를 하였다. 조사방법은 운영자 면담과 편의시설 설치현황 실측조사, 도면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1) 입소자 비용구분(무료 10곳, 실비 5곳), 지역별 분포현황(경기도 6곳, 서울 4곳, 충청도 3곳, 대전 1곳, 경상도 1곳), 규모별 구분(10인미만 3곳, 10~30인 5곳, 30인이상 7곳)

<표 4> 조사대상 개요

시설명	구분	위치	현원/정원	직원수	운영주체	신고일	입지특성	규모 (지상/지하)	연면적 (㎡)
A	실비	충남	9/9	3	개인	04.04	근교	2/0	198
B	실비	경기	8/9	3	개인	06.02	전원	1/0	97
C	무료	충북	6/9	2	개인	05.11	전원	2/0	209
D	무료	서울	10/10	2	법인	06.03	도시	2/0	115
E	실비	경기	22/20	6	개인	06.02	도시	3/0	412
F	무료	서울	21/21	10	법인	05.08	도시	3/0	-
G	무료	경기	26/28	6	개인	06.01	근교	2/0	363
H	실비	충북	20/29	7	개인	05.08	전원	2/0	421
I	실비	경북	18/30	5	개인	05.08	전원	2/0	431
J	무료	대전	50/52	11	법인	00.09	근교	1/0	580
K	무료	경기	42/56	11	공공	00.08	도시	3/1	-
L	무료	경기	64/70	22	법인	05.07	도시	3/1	-
M	무료	경기	82/100	18	공공	04.12	근교	4/1	3200
N	무료	서울	60/60	14	법인	77.09	도시	1/2	1390
O	무료	서울	62/64	16	법인	81.08	도시	1/3	1606

32. 노인양로시설의 실태조사 및 분석

(1) 단위공간의 설치현황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양로시설 규모에 따른 시설기준을 살펴 보면,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에는 침실²⁾과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의무가 있으며, 화장실과 세면장및목욕장, 세탁장및세탁물 건조장 중에서 한 곳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결과 화장실에 샤워시설과 세탁기를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공간을 협소하게 활용하고 있었으며, 설치기준 외에 관리사무실과 거실공간³⁾을 추가설치한 곳이 많았다.

<표 5> 단위공간의 설치현황

시설 규모	단위공간	10인미만			10인이상 30인미만				30인이상										
		기준	A	B	C	기준	D	E	F	G	H	기준	I	J	K	L	M	N	O
법적 설치 공간	침실	●	●	●	●	●	●	●	●	●	●	●	●	●	●	●	●	●	●
	식당및조리실	●	●	●	●	●	●	●	●	●	●	●	●	●	●	●	●	●	●
	화장실	a	●	●	●	●	●	●	●	●	●	●	●	●	●	●	●	●	●
	세면장및목욕장	a				a				●	●	●	●	●	●	●	●	●	●
	세탁장및세탁물건조장	a				a				●	●	●	●	●	●	●	●	●	●
	비상재해대비시설	●	●	●	●	●	●	●	●	●	●	●	●	●	●	●	●	●	●
	의무실					b					●				●	●	●	●	●
	체력단련실및오락실						●					●			●	●	●	●	●
	관리사무실		●			b	●	●	●	●	●	●	●	●	●	●	●	●	●
	자원봉사자실					b					●	●	●	●	●	●	●	●	●
추가 설치 공간	종교공간			●				●				●			●	●	●	●	
	프로그램실											●	●	●	●	●	●	●	
	강당									●				●	●	●	●	●	
	거실		●	●	●		●	●	●	●	●	●	●	●	●	●	●	●	
	물리치료실													●	●	●	●	●	
	환자실								●			●	●	●	●	●	●	●	
	휴게실													●	●	●	●	●	
	창고			●						●				●	●	●	●	●	
기타													●	●	●	●	●		

a, b는 그 중에 하나 설치함, 세탁장및세탁물건조장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예외 가능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시설에는 세면장 또는 세탁장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의무실, 관리사무실, 자원봉사자실 중 한 곳의 설치가 추가된다. 그러나 소규모시설처럼 화장실을 복합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세면장이나 세탁장을 별도설치하지는 않았으며, 관리사무실은 해당규모에 모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

었다. 30인 이상의 대규모시설은 모든 실을 전용공간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실 및 오락실이 추가되지만, 실제로는 이를 위한 전용실을 확보하기 보다는 거실공간을 다용도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단위시설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적 의무설치공간 이외에 각 시설별로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공간들 중 가장 많은 곳은 거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수행 및 친교활동, 오락활동, 식사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입소노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양로시설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상 별도의 종교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7곳이나 되었으며, 입소노인의 고령화에 따라 건강상태가 악화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경우도 6곳이나 되어, 자립형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입소자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에도 입소노인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6곳) 공간에 대한 요구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침실

노인복지법 상으로는 거실이라 명하고 있는 침실은 1인당 5㎡이상의 면적이되, 1실의 정원은 4인 이하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에서는 2인 1실이 가장 보편적이었으며, 4인실 이상은 중환자들을 모아놓은 환자방에 해당되었다.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침실에 화장실이 함께 설치된 곳은 7곳이었으며 그 중에는 두 침실 사이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이용하게 한 곳이 3곳이었다.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비상호출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3곳뿐이었으며 이마저도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실정이었다. 그 외의 활동공간 및 유효폭의 확보, 단차제거 등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표 6> 침실 편의시설 설치현황

시설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인원/실	23	2	2	2	2	2	2	2	23	23	3	12	12	6	4
객실양식	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면적/인(㎡)	6.4	5.9	4.1	7.8	4.4	-	-	6.7	5.3	4.5	5.5	9.5	8.1		
비상호출	X	X	X	X	X	X	X	X	X	X	X	O	●	X	O
미끄럼방지	●	●	●	●	●	●	○	●	●	●	●	●	●	●	●
출입문	●	●	●	●	●	●	○	●	●	●	●	●	●	●	●
문턱	●	●	●	○	●	●	●	●	○	●	●	●	●	●	●
스위치높이	●	●	●	●	●	●	●	●	●	●	●	●	●	●	●
활동공간	●	-	-	○	●	○	-	●	-	○	●	●	-	-	-
비고					환, 화	환, 화			환, 화	환, 화	환, 화	환, 화	환, 화	환, 화	환, 화

●:이용에충분함 ○:이용에적합함 ○:이용에불편함 X:설치안함 환:환자방 화:화장실설치

(3) 욕실 및 화장실

욕실 및 화장실에 대한 기준은 편의증진법 외에는 적용기준

2)법규상으로는 '거실'로 명시되어 있으나 개념상의 혼돈이 야기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침실'로 칭함.

3)본 연구에서의 '거실'은 법규상에 명시된 거실이 아닌, 일반적인 가정의 공용공간으로서 몇 개 단위의 침실에 둘러싸인 거실공간을 지칭한다.

이 없다. 시설 내 공간 중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비상호출기 설치가 매우 미흡하였으며, 세면대나 욕조, 핸드레일 설치도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곳이 많았다. 그러나 단차제거나 유효폭 및 활동공간 확보, 미끄럼방지 바닥재 설치 등은 대부분 충족시키고 있었다. 특히 소규모시설에서는 화장실 내에 세탁기와 목욕공간을 함께 설치하여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이용하기에도 열악하였다.

<표 7> 욕실 및 화장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

시설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미끄럼방지	●	●	●	○	○	○	○	●	○	●	○	○	○	○	○
단차	●	○	○	○	○	○	○	○	○	○	○	○	○	○	○
유효폭/활동공간	○	○	○	○	○	○	○	○	○	○	○	○	○	○	○
핸드레일	●	X	●	●	○	○	○	○	X	○	X	○	○	○	X
비상호출기	X	X	X	X	X	X	X	X	X	X	X	○	○	X	X
세면대	○	X	○	X	○	○	X	○	○	○	○	○	○	X	X
샤워기/욕조	○	○	○	○	○	X	○	○	X	X	X	○	X	○	X
비고		세	바	바	세	바			탕	탕			탕		세

●:이용에충분함 ○:이용에적합함 ○:이용에불편함 X:설치안함
세:세탁기설치 바:바닥난방 탕:목욕탕 별도설치

(4) 건물 주출입구 및 현관

주출입구에 대해서는 단차제거 및 출입문의 적절성, 유효폭 및 활동공간의 확보, 경사로 설치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설이 이용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출입구 전면의 경고블럭과 경사로 및 현관 등의 핸드레일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건물 주출입구 및 현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시설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단차	●	○	○	○	○	○	○	○	○	○	○	○	○	○	○
출입문	○	○	○	○	○	○	○	○	○	○	○	○	○	○	○
경고블럭	X	X	X	X	X	X	X	○	X	X	X	X	X	○	X
유효폭/활동공간	○	○	○	○	○	○	○	○	○	○	○	○	○	○	○
경사로	-	○	○	○	-	○	○	○	○	○	○	○	○	-	○
핸드레일	X	○	X	X	X	X	○	○	○	X	X	○	X	X	X
현관	○	○	○	○	○	○	○	○	○	○	○	○	○	○	○

●:이용에충분함 ○:이용에적합함 ○:이용에불편함 X:설치안함

(5) 수평이동공간(복도 및 통로)

시설 A, B, D, J는 거실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시설로서 복도 및 통로가 아닌 거실공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의 수평이동공간에서는 대부분의 편의시설 설치가 우수하였다. 특히 5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 있어서는 복도 공간에 알코브 등을 설치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활용도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수평이동공간(복도 및 통로) 편의시설 설치현황

시설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단차	●	●	●	○	○	○	○	○	○	○	○	○	○	○	○
보행장애물제거	●	○	○	○	○	○	○	○	○	○	○	○	○	○	○
미끄럼방지	○	○	○	○	○	○	○	○	○	○	○	○	○	○	○
핸드레일	○	X	○	X	○	○	X	○	X	X	○	○	○	○	○
유효폭/활동공간	-	-	○	-	○	○	○	○	○	-	○	○	○	○	○
비고	거	거		거						거		복휴	복휴	복휴	복휴

●:이용에충분함 ○:이용에적합함 ○:이용에불편함 X:설치안함
거:거실중심의 소규모시설 복휴:복도내 휴게공간설치

(6) 수직이동공간(계단 및 엘리베이터)

A, D, F, H, I 시설은 2층 이상의 건물이지만 노인침실이 1층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B, C, G, J 시설은 단층 시설이기 때문에 수직이동공간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나 경고블럭 설치는 충족시키는 시설이 두 곳밖에 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표 10> 수직이동공간(계단 및 엘리베이터) 편의시설 설치현황

시설명	E	K	L	M	N	O
계단	○	○	○	○	○	○
엘리베이터	○	○	○	○	○	○
미끄럼방지	○	○	○	○	○	○
핸드레일	○	○	○	○	○	○
유효폭/활동공간	○	○	○	○	○	○
경고블럭	X	X	X	○	○	X

●:이용에충분함 ○:이용에적합함 ○:이용에불편함 X:설치안함

(7) 외부공간

외부공간 중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주차장에 있어서는 설치가 매우 양호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단지내 보도, 산책로, 벤치 등의 외부공간 요소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시설 이외의 조사대상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외부공간이 열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표 11> 외부공간 편의시설 설치현황

시설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주차장	○	○	○	○	○	○	○	○	○	○	○	○	○	○	○
단지내보도	-	-	-	-	-	○	-	○	-	○	○	○	○	○	○
산책로	X	X	○	X	X	○	○	○	○	○	○	○	○	○	○
벤치	○	X	○	X	X	○	X	○	X	○	○	○	○	○	○
비고						수						수			

●:이용에충분함 ○:이용에적합함 ○:이용에불편함 X:설치안함 수:수원내 위치

4. 결론

본 연구는 노인양로시설의 설계기준 작성에 앞서 2000년 이후에 신축한 15개의 무료 및 실비 양로시설을 대상으로 계획현황 및 편의시설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양로시설의 규모에 따라 법적으로 설치공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실제 설치현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실성을 반영하여 설치공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각 시설은 관련법규를 토대로 편의시설이 대체적으로 잘 설치되어 있었으나, 비상호출시스템이나 경고블럭, 핸드레일의 설치는 아직까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각 공간별로 노인을 배려한 여러 설계요소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시설의 규모에 따라 설치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노인의 특성과 양로시설의 노인 및 관리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설계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서유석, 양로원과 근린생활권의 관계성 및 시설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논, 1994
2. 서유석, 한국의 노인시설 유형과 실태, 건축 9802
3. 법제처 <http://www.moleg.go.kr/>